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자산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자동차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6.26 - 2012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KTB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| 변경일자 | 변경사유 | 주요 변경내용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| 변경전 | 변경후 |
| 2012.06.29 | 제12조 (투자신탁회계기간) | 다만,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| 다만, 2012년 6월 25일 경과 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하며,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2012년 6월 25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간 : 2012년 6월 2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.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: 2013년 1월 1일 부터 매1년 |

| | | | 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2012.06.29 | 제38조 (투자신탁보수) |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 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(단,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을 제외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수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|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 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단, 회계기간 종료일을 제외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 생략 2. 제1호의 보수계산기간 이후 도래하는 보수계산기간: 직전의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도래하는 매분배금 지급기준일까지 3. 생략 |
| 2012.06.29 | 제39조 (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 | ②-1. ~ 4. 생략 5. 수익자총회 관련 | ②-1. ~ 4. 생략 5. 전체 수익자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 |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| 비용 6. ~ 11. 생략 추 가 | 련비용 6. ~ 11. 생략 12. 추정 NAV 산출 등 한국 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 |
| 2012.06.29 | 제41조 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 | ①-1. 지급 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영업일 | ①-1. 지급 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.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|
| 2012.09.10 | 제48조 (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) | 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| ①-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) |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| 변경일자 | 변경사유 | 성명 |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| 협회등록번호 |
|------------|------|-----|---|------------|
| 2012.06.29 | 말소 | 김남기 | -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성자산운용 신탁회계팀 - 채권 2팀 - 채권 1팀 - ETF 운용팀 | 2109001159 |
| 2012.06.29 | 신규 | 김남의 | -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학사 -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 1팀 | 2110000109 |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RESTRICTED - PUBLIC_HSS FS SEL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| 변경전 | | | | 변경일 | 변경후 | | | |
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| 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|
| 안진회계법인 | 1년 | 110만원 | 서면계약 | - | - | - | - | - |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적정함

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
- 공정함

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
- 적정함

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탁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
- 해당사항없음

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
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